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4 Compliance Program

영 업 부



자율준수 편람 제 ㆍ 개정 이력

구 분	일 시	개정내용
제 정	24.03.04	자율준수 편람 제정
1차 개정	24.04.23	공정위 주관/조정원 주최 CP등급설명회(02.23)와 찾아가는 CP설명회 변경내용 및 추가 수록 1. 평가항목 및 세부측정지표 변경 2. 하도급 대금연동제 및 분쟁조정제도 및 분쟁조정사례
2차 개정	24.07.10	24년 상반기 주요정책동향 및 주요제재사례 추가 등재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만보중공업 대표 남양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만보중공업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 ESG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경영 목표는 가시적인 경영 성과와 이익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ESG 핵심요소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전담 부서를 통해 CP 문화 정작 및 확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만보중공업은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경영이 어렵습니다. 오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은 CP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자율준수 편람을 적극 활용하여 CP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만보중공업 대표이사 남양준

발간사

만보인 그리고 만보 고객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결정하고 2024년 1월 2일 대표님께서 직접 신년회를 통해 CP도입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ESG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각오의 천명이었습니다.

CP전담 관리자를 새로이 임용하고 전담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CP레터 발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CP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이 실제 업무에 폭넓게 사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충실한 준법지침서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숙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만보중공업·신뢰받는 만보중공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보인과 만보의 이해관계자 모두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

만보중공업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박 형 배

목차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CP의 의의 2. CP제도의 연혁 3. CP관련 최신 판례 4. CP등급평가 개요 5. 평가단계별 주요내용 6. CP법제화 내용 7. CP제도개선 방향 8.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 9. 평가항목의 구성 및 취지 10. CP등급평가 FAQ 11. CP전담 조직 12. CP추진 계획 13. CP운영제도 및 방침
PART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임직원 행동가이드	1. 기본원칙 2.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3. 하도급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4.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5. 약관규제법 자율준수를 위한 점검지침 6. 당사 적용 주요 공정거래법규
PART 3. 공정거래법 해설	 공정거래법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PART 4. 약관법 해설	 약관법의 적용범위 약관법의 특성 불공정한 약관조항
PART 5. 상생협력법 해설	 납품대금연동제 개관 납품대금연동제 용어정리 납품대금연동제 절차 납품대금 약정시 작성방법 납품대금연동표 작성 예시 Q&A로 이해하는 납품대금연동제
PART 6.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	 서설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PART 7. 부록	 최근 정책동향 주요제재사례

PART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CP의 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1.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

※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23년 말 기준 742개 기업이 CP를 도입하여 운영중

2. CP의의



과도한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업

공정위 조사 • 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 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 확산

CP 도입 현황: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	'0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도 입 기 업	377	486	552	587	633	637	654	678	693	696	709	717	734	742

2. CP제도의 연혁

- 01년
- 13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 발족 → 자율준수규범 제정 • 선포(7.5)
- 02년
-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최고 40%) 공표명령(1단계 하향) 감경, 고발면제 등
- 06년
- CP 등급 평가제를 도입
- 08년
- 10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
- * 등급평가 결과 A이상 과징금(10~20%) 및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부여(고발면제 폐지)
- 10년
- 3월. 등급평가기관의 공정성, 신회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 변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3년
- 7월.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기업에는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평가제도 개선
- 14년
- 2월. 법위반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목적으로 CP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 지속 제기되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CP 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부여되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폐지**
- 19년
- **법위반기업** CP 등급평가 **신청제한 삭제**, 등급평가 절차 **2단계**, 평가등급 **6등급 개편** 등
- 23년
- CP의 법적근거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6.20)

3. CP관련 최신 판례

[대법원 판결]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

회사가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017다222368: '21.11.25)

[대법원 판결] 사내는 물론 사외이사의 준법감시 의무 인정!

회사가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시민단체와 소수 주주가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1다279347: '22.5.12)

☞ 기업의 예방적 Compliance system 구축과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

4. CP등급평가 개요

1.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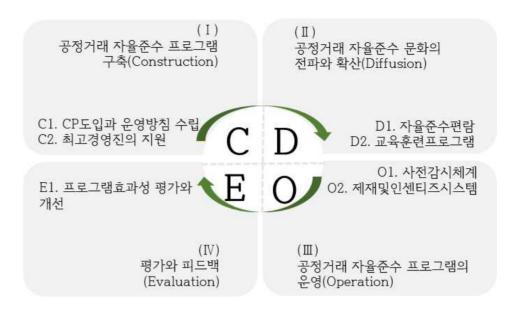
2. CP등급평가 기관 및 평가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평가절차를 주관하며, 실제 평가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담당**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

※ 외부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인(총6명) 포함

3. CP등급평가 기준 (공통기준)



- 4. CP등급평가 기준(기업(기관) 구분별)
- 1) 대기업 (7개평가항목, 20개평가지표, 48개세부측정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공공기관 (7개평가항목, 20개평가지표, 47개세부측정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 시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중견기업 (7개평가항목, 17개평가지표, 40개세부측정지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중소 중견기업확인서', '중소 중견 해당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전자공시시스템공시용 사업보고서 제출

5. 등급 및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 「CP운영 · 평가에 관한 규정」참고 ·

	시정조치 공	공표명령				
CP평가등급 (유효기간:2년)	간행물 공표 크기, 매체 수	사업장 공표, 전자매 체 공표 기간	과징금 감경 (최대)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평가증 수여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2단계 하향 조정		15%(20%)	2년	2년 연속 취득시	0
AA(우수) (80이상-90미만)	1단계 하향	단축	10%(15%)	1년 6개월	2년 연속 취득시	0
A(비교적우수) (70이상-80미만)	조정		12	-	1년	
B(보통) (55이상-70미만)	6=1) + 3	-	-		1=1
C(미흡) (40이상-55미만)	(=1) + 3	150	-	-	1=1
D(매우미흡) (40미만)	.=	1=1	=0	-		1-1

6. 등급부여 현황

- 최근 5년간 평가 신청기업 66개 신청기업(기관) 중 59개 기업(기관)이 A등급 이상을 취득
- 취득시점 별 CP 규정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음

※CP등급평가 신청 기업(기관) 명단등의 자료는 비공개, A등급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기업(기관) 수만 공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기업(기관)수	66	5	7	10	16	28	58
A등급이상 취득기업(기관)수	59	5	4	9	13	28	=

5. 평가단계별 주요 내용

1) 서류평가

서류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기업(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및 자율준수편람)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 가점평가 포함 ① CP등급평가 연속신청 기업 ② 협력업체 CP도입 및 운영 지원 ③ CP확산기여

현장 평가

- 평가위원이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응답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적보고서 내용과 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
- 현장평가 결과는 기존 서류평가 점수의 조정 여부 및 점수 수 준을 결정하는데 활용

심층면접

평가

-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가점 합산 결과 80점 이상(AA등급)인 기업 등에 대하여 실시
- 평가위원이 대상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 CP실무자 등 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

평가점수 및 등급산정

- ·서류평가, 가점평가 및 현장펼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평가점 수 및 등급 산정
- 평가신청연도 기준 2년 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기관) 의 경우 최종 평가등급을 최대 2단계 조정

① 서류평가

- 평가위원이 기업(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자율준수편람을 바탕으로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세부측정지표별로 부여하는 점수는 7단계 척도로 구분 (100~0점)

척도	AAA	AA	A	В	С	D	F
점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55이상 70미만	40이상 55미만	1이상40 미만	0

*평가 진행 중 평가위원이 평가기업(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서류평가척도 / 종합평가등급

서류공	평가척도 : 7개		종합평	영가등급 : 6개
등급	점수 구간		등급	점수 구간
AAA	90이상 ~ 100이하		AAA	90이상 ~ 100이하
AA	80이상 ~ 90미만		AA	80이상 ~ 90미만
A	70이상 ~ 80미만		A	70이상 ~ 80미만
В	55이상~70미만	- 0 1.	В	55이상~70미만
С	40이상~55미만	• 가점합산	С	40이상~55미만
D	1이상~40미만	• 현장평가	D	1이상~40미만
F	0	- 점수조정	F	0

※서류평가시 등급별점수 구간의 <mark>중위값</mark> 부여

인센티브부여 등급 (과징금 감경은 AA이상)

6. CP법제화 내용

- CP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23.6.20.)
- CP제도, 등급평가 기관 지정, 평가 우수기업 대상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등-





공쟁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 예방 효과

주요 내용 1: 자율준수 문화 확산 관련 '일반 규정' 신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대한 일반 규정을 신설[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하여 공정위가 기업의 CP도입 및 확산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120조의2 제1항) 공정위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주요 내용 2 : CP '정의' 및 운영상황 '평가' 근거 마련

✓ 정의:사업자가 공정위의 소관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을 명시

✓ 평가:사업자를 대상으로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 (제1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②공정위는 소관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 자율주수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3: '인센티브' 제공 근거 규정 마련

✓ CP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등 감경 및 포상·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제120조의2 제4항)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과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4: '평가비용' 규정

✔ CP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제120조의2 제5항)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5: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규정

✓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평가업무 위탁 및 지정취소·정지*근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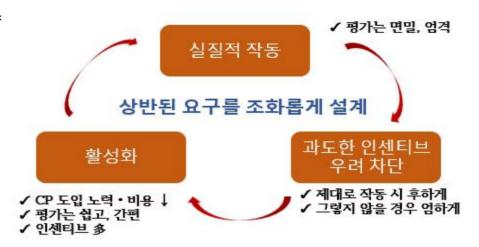
※ 평가기관의 부실 운영 발생에 대비하고,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평가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

※ (제120조의3) 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 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위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CP제도개선 방향



8. 인센티브 제도개선 내용

1) 과징금 감경

①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상환(과거)

2002.1.2.	2004.4.1.	2007.12.31.	2008.10.24 .~2014.8.20.
▶ 1단계 -실질적 도입・운 용:20% ▶ 2단계 -1단계충족 & 위 반행위 시정:50% 이내	▶ 1단계 -실질적 도입 • 운 용:20% ▶ 2단계 -1단계충족 & 위 반행위 시정:40% 이내	▶ 1단계 -실질적 도입 • 운용:15% ▶ 2단계:등급평가 BB이상 -등급별 20~30%이내.1회적용 ▶ 3단계:추가감경-위반행위 시정:20%추가	▶ 등급평가 A이 상 1회감경 -A: 10%이내 -AA: 15%이내 -AAA: 20%이내

②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상환(개정안)

평가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CP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

- ◆ 적용 등급
 - AA이상
- * 최근 5년간 등급평가 신청기업 중 AA이상 63%
- ◆ 적용 요건
 - 기본 감경: AA이상의등급(AA:10%, AAA:15%이내)
 - 추가 감경: 5%이내(최대 20% 이내 감경)
- *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적용
- ◆ 적용 횟수
 - 1회에 한하여 적용

- ③ 적용 제외 요건 신설(개정안)
-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경 요건에 해당할지라도 혜택 부여가 법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
- 적용제외 사유 폐지(과징금 ' 14.8, 시정조치 18.10), 현재는 직권조사 면제만 규정
- ◆ 필요성
 - 폐지되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 재도입에 따라 적용 제외 요건 재신설 강화 필요
- ◆ 적용 요건
 - ① CP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②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1.2.3.4.8호에 해당하는 행위)
 - ④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 기존 6개 요건 중 일부 요건 수정, 삭제(수정:부당한 공동행위, 삭제:과거3년간 3회 이상 위반하여 위반횟수 가중치 5점 이상)
- ④ 적용제외 요건(부당한 공동행위)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공동행위" 라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때는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⑤ 평가지표 및 가점 기준 개선

CP도입요건 충족여부, CP운영상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 지표개선

-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일부 지표 삭제를 통한 평가지표 축소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신설

구분		기존	변경		
	평가지표수	세부측정지표수	평가지표수	세부측정지표수	
대기업 (공기업포함)	227	667}	207	487]	
공공기관				477}	
중견 • 중소기업	177}	54개	177}	407}	

8. CP평가항목 구성 및 취지

C 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이 수립

- ✓ CP특성상 가시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CP운영을 위해서는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천의지 필요
- ✓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개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를 인지하고 법규 준수 실천을 위한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필요
- ✓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직원들에게 공표

C 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 CP의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필요
- ✓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운영성과를 관리 필요



D 1. 자율준수편람



- ✓ 임직원에 대한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CP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부지침서 제작 필요
-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포함
- 임직원들이 시간·장소 제약없이 쉽게 활용 가능
- 공정거래 법규, 정책의 변화 등을 상시 관찰하여 <u>지속적인 개정</u>필요

D 2. 교육훈련 프로그램

- ✓ CP가 제대로 운영되고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교육 필요
- 최고경영자, 임원 및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필요
- 교육 결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필요

◆ CP문화의 전파와 확산(2개 항목, 7개 평가지표, 14개 세부평가지표, 가중치 0.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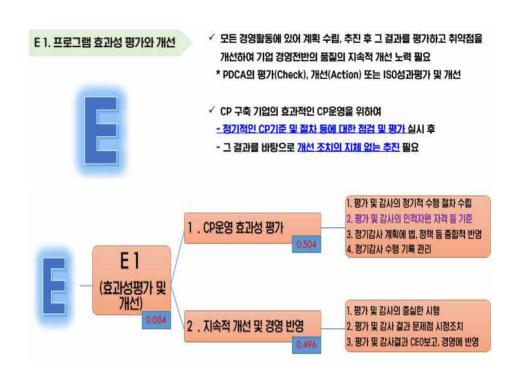
01. 사전감시체계

- ✓ CP운영의 핵심은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예방과 감시(내부감시체계 구축)
- 일상 법 위반 상시 감시, 내부 신속 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
-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 구축 운영, 주기적 보고
- ① 위험평가: 법 위반 사전 식별·예방 활동. 점검 및 취약점 조치(CP구축, 운영 단계)
- ② 사전업무협의제도: 제3자와 거래나 계약시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
- ③ 직접보고체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및 조치 시스템
- ④ 내부고발시스템: 법 위반 행위자나 직간접적 확인자의 보고 및 조치 시스템

02. 제재 및 인센티브시스템

- ✓ CP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능동적, 자발적 제도 준수 환경 조성 필요
- 공정거래 법규위반 행위자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 및 경계심 촉구
- CP 요소별 임직원 참여도 및 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9. CP등급평가 FAQ

1) 2024년도 CP등급평가 일정

※ 금년도 평가일정

신청서 접수	3/15 ~ 4/12
서류평가	4월 ~ 6월
현장평가	7월 ~ 8월
심층면접평가	9월
결과통지(공정위)	10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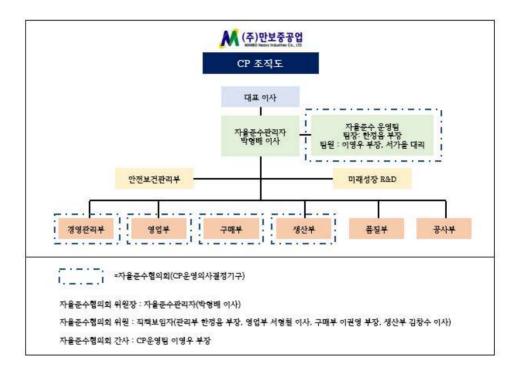
2) 최신 자료 위치 및 주요 내용

※ 참고자层: 한국공정가민조정원 > 업무인내 > 공정가민자물준수프로그램 > OP인내 / OP

게시판	게시물 제목	주요 내용
CP 자료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2024, 2, 29,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 CP의 정의 및 도입 요건 ■ CP등급평가 관련(법 위반시 등급조정, 인센티브, 등급평가증 수여 등)
CP 자료실	CP등급평가 운영지침 (2024, 3, 29, 시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침] CP등급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평가비용 등 [별지] 신청서, 자율준수관리자 확인서, 실적보고서 양식 등 [별표] 평가지표별 가중치, 생략지표, 가점 기준,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등
CP 안내	CP등급쩅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2024. 4.)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전문
CP안내	[2024년] CP등급쩅가 실적보고서 양식 및 작성지침	실적보고서 양식 및 작성지침

10 CP전담 조직

1) CP 전담 조직도



2) CP 전담 조직의 구성

구분	CP 직책	성 명	직 급	임기	시행일
	자율준수관리자	박형배	관리 이사	'24.2.8 ~ '24년 12월 정기 이사회	24.2.8.
CP운영팀	자율준수운영팀장	한정음	관리 부장	'24.2.8 ~ '24.12.31	*24.2.8.
State of the State	자율준수운영팀원	이영우	영업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운영팀원	서가을	관리 대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장	박형배	관리 이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한정음	관리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서형철	영업 <mark>이</mark> 사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이권영	구매 부장	'24.2.8 ~ '24.12.31	'24.2.8.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허충훈	공사 전무	'24.3.25 ~ '24.12.31	24.3.21.
Metru-4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김창수	생산 이사	'24.3.25 ~ '24.12.31	24.3.21.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김원	미래성장 부장 (안전보건겸직)	'24.3.25 ~ '24.12.31	'24 <mark>.3</mark> .21.
	자율준수협의회 의원	최재종	품질 부장	'24.3.25 ~ '24.12.31	'24.3.21.
	자율 <mark>준</mark> 수협의회간사	이영우	영업 부장	'24.2.8 ~ '24.12.31	*24.2.8.

11. CP 추진계획

1) CP 추진 계획



2) CP 교육 계획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해 다음과 같은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내용은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① CP교육 기본 방침

- 1.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CP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육 참여율은 50% 이상 되어야 한다.
- 2. CP주관 부서는 교육별 의무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3. 교육 미 이수자 및 CP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보수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4. CP관련 교육 미 이수자 및 CP위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보수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5. 교육계획은 임원(5인) 의무수강부서(영업부, 구매부), CP운영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CP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교육내용 대상별로 수립한다.

② 대상별 교육계획

- 1. 임원 교육계획(반기별 1회 실시)
- 2. 의무수강부서 대상 교육계획 → 분기별1회 실시 ,

의무수강부서(영업부,구매부)

3. 전임직원 대상 교육계획 → 분기별1회 실시

12. CP운영 주요 제도 및 방침

① CP운영규정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해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반하는 회사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운영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하는 전반에 대한 근본규정,

② CP운영규정 세부운영지침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1. 공정거래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지침 2.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인사제재규정3. 사전업무협의협의제도 운영지침과 교육계획서 등으로 구성된다

■ CP운영규정 제14조 (사전업무협의 제도)

- ① 회사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한다.
- ③ 제1항의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시행하는 규정에 따른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행위를 연 1회 이상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접 보고 체계

자율준수관리자는CP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그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회사 CP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대표이사·이사회 등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가짐

■ CP운영규정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부서의 독립성)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내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 ▶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부서를 최고경영자 직속 부서로 독립하여, 자율 준수관리자가 위 규정 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 및 직접 보고 체계를 확립·확보할 수 있도록 함
- ④ 내부고발시스템

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제한 없이 상시 제보할 수 있음

■ 내부고발 대상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시나 참여, 이를 묵인하는 행위
- 임직원 이중취업 사례,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및 부당한 업무처리
- 기타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금품, 접대요구나 제공사실,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 ►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처리됨
- ⑤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은 회사 인사규정상의 제재 규정의 절차·내용에 따라 제재

PART 2. 공정거래자율준수 임직원 행동가이드

1. 기본워칙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주)만보중공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CP 운영규정) 제6조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만보증공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 (임직원의 의무)

제6조(임직원의 임무)

- 1.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등과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별지 1]서식에 따른 공정거래자율준수실천 서약서에 서명하여, CP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전담부서 또는 법무 또는 감사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한다.
-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교육을 포함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한다. 법무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CP전담부서에 알려야한다.
- 6.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법규 및 CP관련 사내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① 부당한 공동행위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 자율점검 지침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을 것
- · 경쟁사로부터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것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할 것

- ·경쟁사 관련 정보는 적법하게 입수하여야 하며, 입수 경위와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 경우, 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한 수주 예정사의 선 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찰 참가가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지 말 것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지 말 것
- ·입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이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종업체 간 정보 수집 또는 제공, 정보교환 촉진 불가
-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전달해 주지 말 것
- ·당사가 낙찰받은 사업 건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던 다른 사업자를 당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크므로 지양. 단, 반드시 해당 업체 소싱이 필요한 경우는 자율준수사전협의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해당 사업 건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
- ·입찰 관련 회사내부자료, 이메일 등에 담합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에서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업체 사전 협의 완료, 협력 또는 협조 강화, 당사 지원 예정 등)
- ·다른 사업자와 합의·협의 등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낙찰 예정자 또는 수주 물량을 결정 하는 행위는 절대로 불가함을 명심할 것

②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점검 지침

- ·당사와 거래를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거래 개시에 대한 대가로서 해당 거래와 무관한 부당행위(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물품, 용역을 의무 구입,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 요구 등) 를 요구하지 말 것
- ·상기 부당행위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래 개시를 거절 하지 말 것
- ·거래 대상 업체의 선정 또는 거래 거절은 반드시 회사 내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동일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계열 회사 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설정하지 말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만을 거래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을 차별 하여 거래하지 말 것
- ·고객이 당사 서비스, 제품 등을 구입·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 담당자에 불법적 금품 또는 향응(리베이트)을 제공하지 말 것
-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사 서비스, 제품 관련 정보는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
- ·고객이 당사와 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방해·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당사 용역,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기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하지말 것(끼워팔기 금지)
- · 협력업체 거래 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업체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빌미로 거래 물량 축소, 협력 업체 탈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특정 사업을 위하여 경쟁자 핵심 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빼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 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 것
- ㆍ사업 수행 시 거래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
- ·당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 업체에게 정당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재고를 일방적으로 전량 반품 또는 담보·보증보험 등을 해제, 반환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지 말 것
- ·업체가 당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물품 등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

③ 부당지원행위 분야

=부당지원행위 자율점검 지침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행위(상당한 규모·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행세 거래)' 금지규정은 당사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할 것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계열사인 고객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없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린 후 추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변경계약 체결 후 이를 수행할 것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 것
-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드는 행위,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 거나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여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상의 상대방 책임을 면제하는 행위, 계약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또한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 간 거래 시에도 상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3. 하도급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율점검 지침

-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대금 지급, 보복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은 당사/중견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 유의
-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P 운영팀에 문의하여 확 인받을 것
- ·하도급계약이 체결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지 말 저
- · 공정위 표준 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자율준수협의회 또는 사전협의 방식으로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하도급법 위반 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 ·하도급 거래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 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도 조정할 것
-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할 것(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초과 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업체에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용역 등의 수령·검수 요청을 거절· 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통과 사 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것
- · 당초 정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거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으로 그 상세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그로 인해 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 ·기술 자료는 회사 내 기술 자료 요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서를 발급하여 요구할 것
- ·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술 자료는 해당 요구서, 비밀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유용·유출하지 말 것
- ·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에 응할 것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
-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지할 것

4. 하도급대금연동제자율준수를위한 점검지침

-- 하도급대금연동제 위반 행위 자율점검 지침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

※예외사유

- 1)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 90일 이내
- 2) 1회 발주당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
- 3)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
-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고, 회의 또는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 연동에 관한 약정을 임의로 취소/변경하지 말 것

약관규제법 자율준수 점검지침

=약관규제법 자율점검 지침

- ·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자사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자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계약상대방이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이 자사에게 유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 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 제기 등 재판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당사 적용공정거래법규

법령	주요 내용	관련 부서
H 0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22 14
공정거래법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전 부서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전 구시
	● 자한 기급설립의 세인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하도급법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선급금의 지급	
	•내국신용장의 개설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부당반품의 금지	그 레 ㅂ
	●감액금지	구매부,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 ●경제적	기술영업부,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생산부,
	●기술 자료는 제공 요구 금지 등	품질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공사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약정서 발급 및 물품수령증 발급의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납품대금 지급	구매부,
	●검사기준 설정 및 불합격 사실 통보 의무	기술영업부,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부당 결정, 감액 금지 의무	생산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의무	품질부,
	●물품 구매 강제 금지의무	공사부
	●발주 취소 금지의무	
	●원가자료 등 정당한 사유없는 경영상 정보요구 금지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금지	전 부서
보호법	- 이미의 면에 면서	면 무게
약관규제법	•약관의 명시 설명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금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금지	
	•고객의 계약상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 금지	
	●면책조항 금지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금지	구매부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금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о ш ,	

PART 3. 공정거래법 해설

1. 공정거래법개관

1.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조사 및 심사절차

1	사건인지	■ 직권인지 또는 신고(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입력		
2	조사	■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조사, 진술 요구 등 ■ 조사방해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물리력 행사 시)		
3	조사 후 조치	■ 혐의가 없는 경우 : 심사관 전결로 종결 ■ 혐의가 있는 경우 : 심사 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4	위원회 상정	■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 피심인에게 심사 보고서 송부 후 통상 2~3주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5	위원회 심의 의결	■ 일반인에게 공개, 피심인과 심사관이 상호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 의결서 작성	불복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 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①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 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 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 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②합의추정제도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 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 *복멸이란 합의의 추정을 깬다는 의미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및 위반사례

①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a.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격'이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

b.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 '거래조건 '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 판매조건, 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개념
-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이란, 지급수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과 같은 개념

c.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 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

d.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e.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

f.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종류, 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g.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영업의 중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h.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간에 사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

②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반사례

소형 베어링 제조 ·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15-03-03)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A, B, C, D사는 2003.6.2.부터 2011.8.25.까지 국내 소형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할 것과 상호 납품 영역을 존중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1)가격유지 합의 및 실행

A와 B는 원재료인 강재 가격 및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영업책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소형 베어링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후, 합의 내용을 C, D에게 전달하고 실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이들은 국내 주요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 및 대응방향을 공유하면서 주요 수요처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공동으로 가격인하 요구에대응하여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합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 납품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저가로 견적을 제출하여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시장 점유율 공정에 관한 합의도 하였습니다.

(2)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A, B사는 2008년 원재료인 강재 가격 및 환율이 급상승하자 영업책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산업기계용 소형 베어링 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국내 C, D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요처별 가격인상률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제재

-> 과징금: A사 36억 6,800만원, B사 49억 1,200만원

*C, D사는 A, B의 100% 국내 자회사로서 A, B사의 합의에 단순 가담 또는 합의 내용 대행에 불과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주체가 아닌 점,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24-02-21)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B, C는 한국환경공단의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이전에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구체적인 투찰률을 합의(A 94.89%, B 94.90%, C 94.92%)하여 실행하였음.

■제재

-> 과징금: A사 26억 4,400만원, B사 5억 8,200만원, C사 24억 9,700만원 *C는 A, B와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공정위는 A, B가 C의 연락상대방을 기억못하고 있으나 B가 가격 경쟁 제한 합의를 제안하고, A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C에도 연락하여 의사의 일치를 확인하여 임원에게 보고후, 다시 3사간 구체적인 투찰률 합의를 지시하게 된 과정에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투찰률 합의에 참여한 A의 김모 부장, B의 라모 차장, C의 이모 차장은 평상시 교류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입찰 건이외 일부 입찰 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③ 입찰담합의 유형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입찰가격 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 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 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 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입찰대상공사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업 활동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단순히 발주처가 공표한 설계공사금액의 계산에 대해 조사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안전시공과 건설원가인하를 위해 신공법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단체가 관련사업자의 공사금액 계산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통적 인 항목에 대해 표준적인 계산방법이나 작업량 등을 알려주는 지도행위

다. 판단 기준

-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인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b.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 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 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업체들 간에 일정한 범위 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 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 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 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다. 판단 기준

-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은 입찰 시 사전에 수주 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수주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든지, 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나 기존의 수주와의 계속성이나 관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c. 경쟁 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 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 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 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 공표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며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 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 되어 재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d.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 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 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에 대하여 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 괄적으로 정리, 공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나 또는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 동 수주하는 경우

e. 경영간섭 등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워칙적으로 위반된다.

가.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 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 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등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나. 허용되는 행위

-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 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행위
-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④ 입찰담합 위반사례

2개 고무배합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3. 3. 28)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고무배합유의 유종별 특성상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라핀오일은 항오염성이 우수하여 신발류, 팩킹제품 등에 사용되고, 나프텐오일은 항오염성, 탄성 등 고무제품에 균형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각종 튜브, 전선피혁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아로마오일은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나 오염성이 있어 색상이 문제시되지 않는 타이어 등의 흑색 고무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고무배합유는 제조·판매사업자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K사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M사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K사과 M사의 가격조정 요청공문, K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M사와 K사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 K사과 M사는 2008.1.23.부터 2009.10.25.까지의 기간 동안 K폴리켐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인 파라핀오일(P-5)(이하 'P-5'라 한다)의 가격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조정가격과 조정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실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발주처인 K폴리켐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이사건 고무배합유를 공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K사와 M사는 공동으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K사는 과징금 1억 22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한다.

2개 고무배합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993. 3. 28)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고무배합유의 주요 제조·판매사업자는 K사, M사, SH사 등이 있다. 이 중 M사와 K사 2개사가 약 70%의 시장점유율(국내, 수출 포함)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M사가 평균 약 44%, K사가 평균 약 2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판단

M사와 K사 공동으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M사는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K사는 시정조치 및 과징 금을 면제한다.

13개 건설사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1, 10, 22)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3개 건설사들의 협력 업체로 J코리아 등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는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의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판단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 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 전기 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억 800만원을 부과하였다

조달청 발주 P팜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2, 08, 31)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K사와 D텍은 조달청의 1999년도 P팜 입찰이 있기 직전인 1998년 12월경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2L규격의 P팜 입찰에서는 K사의 들러리로 참여하고, 4L 규격의 P팜 입찰에서는 D텍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각각 예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K사와 D텍은 조달청의 P팜 입찰 시에는 2L와 4L 규격제품의 입찰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물량이 더 많은 규격의 제품을 낙찰받은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일정 물량을 임가공 의뢰함으로써 양 사가낙찰물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공정위 판단

조달청이 발주하는 농약제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와 낙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 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25억 7,000만원)을 부과하였다.

4개 반응개시제 제조 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 03. 31)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서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영업담당자 간의 회합,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수요처 입찰이 있을 때마다 수요처별 낙찰자 또는 납품업체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물량을 침범하지 않기 위한 합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견적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상호 교환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쿠 악조는 피엠씨와 세기, 동성 간의 수요처 및 물량 분할, 가격인상 합의 진행 상황을 피엠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피엠씨가 경쟁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을 큰 변동 없이 제출하도록 승인하여 공동행위 지속에 대한 의사를 암묵적으로 표시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물량 분할이고,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반응개시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반응개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당공동행위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조치, 관련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	
		등	
행정	-1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적	과징금	위	
제재	공표명령		
	입찰참가		
	제한		
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적		※중대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도 처벌	
제재		가능	
리니언	1순위	과징금 전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	
시	2순위	고지그 이브 가며 청시크바 머게 키느.	
제도	이후	과징금 일부 감면, 형사고발 면제 가능	
손해			
배상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책임			
집단			
소송			

5. 부당한 공동행위 업무상 주의사항

1) 수주자(낙찰자)의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주의욕 등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ㆍ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 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 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찰가격을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 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 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 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 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입찰가격에 대한 유의사항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

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 교화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주수량ㆍ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결 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업계모임 참여 원칙 및 프로세스

모든 구성원은 공정경쟁 자율실천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의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업무수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업계모임 참여원칙

- "업계모임"이란 '회의', '작업반'등 그 명칭이나 '정보'등 그 목적에 불구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참석하게 되는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와의 정기 또는 부정기 모임(일회성도 포함)을 말한다.
- 회사와 관련되는 공정거래법상 주요 담합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담합금지조항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율준수사무국 또는 자율준수관리자 에게 자문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 ① 가격(입찰가격, 구매가격 등)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담합
- ② 과당경쟁방지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담합
- ③ 거래조건 담합
- ④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담합
- ⑤ 제품, 용역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기로 담합

② 업계모임 참여 프로세스

- 모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별첨 2양식에 의한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 시 모임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 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 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

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 업무 가이드라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상 지켜야 할 중요한 행동원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의문이 생기거나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CP Hot Line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와 상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 경쟁사와의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

-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 어떤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
-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 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 1) 이의를 제기하고,
- 2)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 3) 즉시 해당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도 남겨 놓을 것)
- 경쟁사와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입찰조건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 경쟁사와 향후 입찰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 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 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

6. 부당한 공동행위 Check-List

분류	확인할 내용	예	아니오
가격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		
협의	연락이나 정보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		
조절	보를 교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융찰금액,		
	융찰물량 등 입찰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거래상대방의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모임 참석 전, 자율준수프로그램인 업계모임참여 사전		
모임	신고서를 작성하였는가?		
참석	경쟁사 입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문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		
작성	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 또는 "공동으로"문구가 적시 되어 있는가?		

일반불공정 거래행위

1. 개관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7.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행위(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 →공정거래 '저해성'(법 제45조 제1항 본문), '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			
	■당해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		
경쟁제한성	쟁사업자 포함)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경쟁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		
	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불공정성	있음을 의미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		
	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		
	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2.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1) :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의 유형				
공동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단독	■사업자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개시를 거절하			
거래	거나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상			
거절	품·용역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위법성 판단기준

- a.거래 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b.거래 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 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c.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 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② 위반 유형

- =공급·구입 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 우
-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재고부족이나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 거절에도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사업 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3.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2) : 차별적 취급

정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들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①가격・거래 조건 차별의 예시

-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 ②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견적 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4.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3):: 경쟁 사업자 배제

정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① 부당 염매

-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한 고가 매입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하여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 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계속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기타 거래상의 부당 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 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5.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4) : 부당한 고객 유인

정의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① 위법행위 유형

-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하는 행위
- ■자신과 경쟁 사업자의 영업 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6.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5): 거래강제

정의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① 금지 행위 유형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 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끼워팔기)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 판매)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 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7.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6) : 거래상 지위남용
- ①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 가능성, 사업 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 ② 구입 강제
-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③ 이익 제공 강요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수요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④불이익한 거래 조건 설정·변경

-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거래 조건에는 각종의 구속 사항, 저가 매입 또는 고가 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 방법, 계약 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 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 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⑤ 경영간섭

- ■임직원 선임·해임 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 8.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7): 구속조건부 거래

정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 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 계약을 모두 포함
- ■경쟁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 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 상대방과 업무 제휴 시 경쟁사와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9.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8) : 사업 활동 방해

정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방해 활동 네 가지 유형이 존재

① 기술의 부당 이용

-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②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이때 타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 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 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 ■한편,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 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다른 사업자의 핵심 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③ 거래처 이전 방해
- ■상대방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여기서 사업 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 ④ 그 밖의 사업 활동 방해
- ■위 행위 외, 자기 능률·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사업 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전달,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시정명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②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③ 형사처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 제기 가능

④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11.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22-08-24)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정식 발주서에 의한 구매가 아닌, 프로젝트별 예정수요 품목 및 수량을 장납기 리스트에 기재하여 A에게 공유한 후 구매팀 또는 일선 부서에서 품목명, 수량, 납기일, 납기장소 등을 기재한 선진행 요청�이메일을 송부함으로써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았다.

대금지급은 매월 기성청구 마감일인 25일까지이며 청구된 건에 대하여 익월 29일 S이엔지의 결제조건에 의하여 지급함을 규정하였다. 다만, S이엔지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A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을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S이엔지는 S텍이 기한을 도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3%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S이엔지는 S텍에게 지연된 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 공정위 판단

*S이엔지와 S텍 주식회사는 자동화설비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금지급기한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발주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은 후 자신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S이엔지는 자동화설비 부품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연을 가능하도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면서도 자신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22-07-10)

■행위 사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P사는 2019.1.7 자신의 회사 퇴사 예정자를 B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하였다. 2019.4.15 신고협력업체의 노동조합에서는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한 부정 급여 수령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9.7 B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였다.

2019.9.4에 공문으로 2019.12.31 로재정비 협력계약이 종료되며, 기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 공정위 판단

P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와의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임에도 2019. 7경 사전 통지없이 거래를 종료하였고, B에게 기본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규정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서면통보 등 기본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점, 계약기간 중 발주를 중단함에 따라, B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 (약48,434천원 상당의 매출 감소)과 전담인력을 다른 사업에 과다 투입하는 등경영상 비효율을 겪은 점, 이 사건 발주가 중단된 시점인 2019년 7월에 B는 P케미칼과 주계약이 계속 거래 중에 있었는바, 자신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P케미칼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 발주중단을 정식 항의하기 어려워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항변] P로부터 위탁받은 COG 정제용역 물량이 감소하여 화성공장 정비 물량이 감소 하였고, B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후 발주를 중단하였다.

COG 정제용역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B와 이 사건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B가 먼저 화성공장에서 전담 인력을 철수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 중단이 아니다.

이 사건 거래가 가스 정제용역과 관련된 배관용접 작업이므로 안전사고의 위험 성이 높은점을 고려할 때 노사문제로 안정적 조업 여부가 불투명한 B와의 거래 를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다.

12. 불공정거래행위 FAQ

Question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 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둥을 두어도 되나요?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할 때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즉,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할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거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uestion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타업체의 공급요청 거절이 위법인가요?

▶ 공급자가 A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요구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거나 거래거절의 목적이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여 경쟁사업자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 거래거절행위의 경쟁제한 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3.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 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사업자가 아닌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 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 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 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4. 부당지원행위 제재

① 시정명령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② 과징금

-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 금을 부과

③ 형사처벌

-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5. 부당지원행위 사례

와인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 사건(2021.6.17.)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롯데칠성㈜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 →자회사 MJA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 원의 경제상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 -와인 저가 공급: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판촉사원 비용 부담: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비)을 롯데칠성이 직접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담
- -모회사 인력 제공: 롯데칠성 지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MJA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제재

-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행위 중지 명령)
- → 과징금 총 11억 8,500만 원
- → 고발(롯데칠성㈜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검(2022. 1. 27)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통행세 거래'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올품" * 지분 100%를 2세에 증여한 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본부 개입하에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고가 매입 행위: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 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 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약 4년간 동물 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 거래 행위: 계열 사료 회사들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년간 거래 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 저가 매각 행위: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는 2013년에 본인 보유 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現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27억 원을 부당지원
- →올품(舊 한국썸벧판매㈜)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함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이랜드리테일의 변칙적인 자금 및 인력 부당지원 사건 (2022. 5. 16.)

■행위 사실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이랜드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이랜드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 강화되었음

→이랜드리테일은 2016. 12.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내부 적으로도 부동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자산 취득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설정되지 않았음

■ 이랜드리테일은 2014. 7. 'SPAO'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였으나, 자산 양도 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음

→이랜드리테일은 이관 대상 브랜드인 SPAO가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는 점, 반면 이관받는 주체인 이랜드월드는 양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양도 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을 양도하였음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음

■ 이랜드리테일은 2013. 11. ~ 2016. 3.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 비를 대신 지급

■제재

-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 →과징금 총 49억 7,400만 원

6. 부당지원행위 FAQ

Ouestion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나요?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外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Ouestion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나요?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계열사 外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Ouestion

용역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나 요?

- ▶부당지원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있음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이자 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자금지원행위 해당 가능

Question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지원행위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도록 설 정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 음(회계적 방법으로 가치평가가 가능한 경우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계열회사 이외에도 동종의 상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가 각 제공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담은 서류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음

PART 4. 약관법 해설

1.약관법 개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2. 약관 규제의 취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3.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2조)

-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 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 약관의 요건
- ① 일반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 ② 상대방이 다수이어야 함
- ③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④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4. 약관의 종류

- 판매
- . 판매점 지정계약서, 수출제품 매매 기본계약서, 제품 공급(매매) 계약서, 수출해송일반약관, 운송계약 경쟁입찰 약관, 운송하역일반계약규정, 내수 재고품 (주문품) 약관(e-Market), e-Transaction 약관 등
- 구매
- . 설비 및 기기구매 일반약관,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인터넷 구매시스템 이용약관, 설비구매/시설공사/인터넷 구매 입찰 유의서, 원료구매 일반약관, 외주작업 계약 일반약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등 기타
- . 물품매각 계약 일반약관 등

2.약관법의 특성

1. 약관의 작성•설명의무(법 제3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 ▶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①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② 고객 요구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③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개별약정의 우선(법 제4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3.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 게 해석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법 제16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 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불공정한 약관조항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 는 조항
-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 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소송 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쌍방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7조)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주차장 내 도난, 파손 등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운송약관
-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 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매매약관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 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금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 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심결례〉

㈜코일플러그는 2018.8.28. 개정한 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

제 13조 제 3항, 제 25조 제 6항 및 제 30조 제 2항에는 피심인의 약관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공지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우편 주소의 오류, 전자우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회원이 공지 내용을 조회하지 않아 입은 손해 및 출금 요청과 관련해 회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블록제인 네트워크 상의 사이버 공격,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블록제인 네트워크의 운영 방침에 또라 프로토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결요지〉

㈜코일플러그는 자신의 이용약관(2018.8.28. 개정 약관)중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 13조 제3 호 제 5조 제 6항 및 제3 0조 제 2호와 같이 피심인의 약관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공지, 회원의 출금 요청과 관련된 문제 및 블록제 인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공격,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심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 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 2. 제 31조 제 3호와 같이 링크된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심인의 손 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하는 조항 시정명령 2019.05.13

4. 계약의 해제 ● 해지 (법 제9조)

-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 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 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 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해제·해지 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함
-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실효약관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채권관계 (예. 전기·가스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파 트 분양 계약 조항
- 계약 후 차량 인도시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자동차 판매 약관 조항
-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운 송약과 조항
-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5. 고객의 권익보호 (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항변권::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상계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 시킬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선택권::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기한의 이익'이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 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약관으로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구 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 하는 것은 무효임

〈싞결례〉

㈜이야랩스는 아래 기재와 같이 회원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회사의 운영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입금 및 출금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기재하고 있다.

- ※ 시정권고 대상 이용약관 조항
- 제 16조(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 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②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
- ※ 시행중인 이용약관 조항
- 제 16조(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심결요지〉

㈜이야랩스는 이용약관 중 제 16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18조 중 '일부 서비스 제한' 사유, 제 23조 제 1항 및 제 6항과 같은 약관조합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야랩스는 위 약관조항들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제재내역> 시정명령 2019.03.26

〈심결례〉

㈜웨이브스트링이 2018.06.15. 개정한 이용약관 제 10조 제 1항 3에는 회원이

피심인의 약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심인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 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싞결요지〉

㈜웨이브스트링은 자신의 이용약관(2018.06.15. 개정 약관) 제 10조 제 1항 3호의 규정과 같이 고객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사유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내역〉시정명령 2019.05.13.

〈심결례〉

피심인이 2018.04.05. 개정한 이용약관(이하 '개정 약관'이라 한다.) 제 28조 (면책조항)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회원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결요지〉

제 28조와 같이 ㈜인큐블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피심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제재내역> 시정명령 2019.05.13

6.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 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 하게 따로 고 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 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

는 객관 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 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7.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14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 임
-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 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입증책임의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Q&A

- Q. 다음은 약관법상 규제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가?
- ① 백화점 주차장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의 손상 및 차량 안 물건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 ②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 중 연체이자율 부분을 공란(또는 특약사항)으로 남겨 두고 사실상 똑같은 이자율을 기재토록 하는 경우
- ③ 아파트 관리 규약상 입주자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
- A. 약관법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방성)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다수성) 일정한 형 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 로
- ① '유일약관'의 예로서 약관법상 약관임
- Q.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약관 설명의 방법은?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 A. 약관 설명의 방법은 고객의 약관 내용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약관을 계약서의 이면에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또는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사유, 기한이익 상실사유, 계약해지시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 금전적 부담이나 법률적 책임부과 내용 등임
- Q. 사업자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약관 조항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예: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이자율 변경)
- A. 약관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약관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이러한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

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Q. 계약서에 정한 모든 조건의 일부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약관 법상 문제가 되는 가?

A. 계약서에 규정된 일부 위배사항이 일정기간의 최고 절차에 의해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는 것" 등의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임의적으로 완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약관법 제 9조 제 2항 위반임

Q.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구매 특수약관에 "연간구매 예상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이 적거나 없어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문제가 되는가?

A. 연간 구매예상량은 조업상황, 정비계획, 물품의 수명 등에 따라 사용량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거래상대방이 납품을 위해 생산 설비 투자, 기술개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고의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미발주 또는 과소 발주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 6조 제 2항 제 1호 위반임

〈심결례〉

- 1.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2023.01.3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영업지역 변경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 (시정 전)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 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 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
- (시정 후)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 제 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 12조 제 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합의 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 (시정 전) 가맹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약관규제법 제 6조 제 2항 제 1호 위반)
- (시정 후) 가맹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 ② 가맹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
- (시정 전)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오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하였다.
- ③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금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약관규제법 제 11조 제 2호)
- (시정 후) 할리스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하였다.
- ④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약관규제법 제 6조 제 2항 제 1호)
- (시정 후)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 따.
- 2. 전국 33개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 심사 [보도일시: 2023.04.13.(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 22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 ②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 ③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제한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 제한 조항
- ④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
- ⑤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 ⑥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제한
- ⑦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등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①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

(시정 전)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 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약관법 제 7조 위반)

(시정 후)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

②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전/안전사고) 골프장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또록 하여야 함에도 사고에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일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약관법 제 6조 제 7조 위반)

(시정 전/귀중품 등의 보관)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함(약관법 제 7조 위반)

(시정 후) 안전사고 및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함

③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제한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 제한 조항

(시정 전)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 및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도록 함(약관법 제 6조 제 11조 위반)

(시정 후)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함

④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

(시정 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필요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약관법 제 10조 위반)

(시정 후)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

- ⑤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 (시정 전) 회원제 골프장에서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유나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경미한 사유로 회사에서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약관법 제 9조 위반)
- (시정 후)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시정
- ⑥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제한
- (시정 전)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탈회에 대해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약관법 제 9조 위반)
- (시정 후)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함
- ⑦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등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 동의 간주 조항(약관법 제 12조 위반)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약관법 제 6조)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약관법 제 14조 위반)등에 대해 시정함
- 3.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주)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보도일시: 23.04.26(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의 조항]

- ①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 ②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 ③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 ④ 회원의 제반 실력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2개사)
- ⑤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2 개사)
-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대한항공)
- ⑧ 최근 발생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 ①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2개사)
- (시정 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된다.
- (시정 후)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 ②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2개사)
- (시정 전)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시정 후)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중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 10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증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하여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 ③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2개사) (시정 전)계약 내용의 변경정차로서 개별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 고 사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만을 규정하였다.
- (시정 후) 계약 내용 변경 시 누리집에서 게시 외에도 전자우편(이메일)등울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하였다.
- ④ 회원의 제반 실력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2개사)
- (시정 전) 개별 통지 없이 회원의 제반 실력(마일리지)을 임의로 정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회원 계좌를 취소하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또는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가능하였다.
- (시정 후) 회원실적 등 정정할 경우 개별 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 ⑤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2 개사)
- (시정 전)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시정 후) 제휴사 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알리고,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 하도록 시정하였다.
- ⑥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2개사)
- (시정 전) 개별 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 계좌 정지 등이 가능하였다. 또한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등 회원이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할 우려가 있었다.
- (시정 후)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회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 ⑦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대한항공)
- (시정 전)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 (시정 후)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 ⑧ 최근 발생된 회원안내서 또는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 (시정 전)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누리집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다.
-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시정하였다.

4. 아이조아 요양보호소 서울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하여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 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

- (시정 전) 고객은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재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여 파양동물을 반환 받고, 파양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약관법 제 6조, 제 9조)
- (시정 후)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한편,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도록 했다.
- ①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 (시정 전)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되어 사업 자의 의무가 중단되고 고객은 파양동물을 즉시 데려가야했다.(약관법 제- 9조) (시정 후) 미지급 파양비에 대해 14일 이내 납입할 것을 최고하고 사업자의 재무 중단 및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삭제하였다.
- ②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 (시정 전)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약관법 제 8조)
- (시정 후) 손해배상액으로 약 6% 이자를 규정하여 과중하지 않게 시정하였다.
- ③ 승ㆍ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
- (시정 전)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약관 법 제 6조)
- (시정 후)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약관법 제재기준

1. 약관법 위반 시 제재기준

시정명령		부당한 약관의 사용중지나 수정 요구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5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①부당이득 반환 ②계약해제나 취소 ③추가 손해배상
형사 처벌	시정명령 불이행시 또는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PART 5. 상생협력법

1. 서설

1. 납품대금연동제 법안 개정(상생협력법)

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최근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부터 지속되는 문제로 이번 기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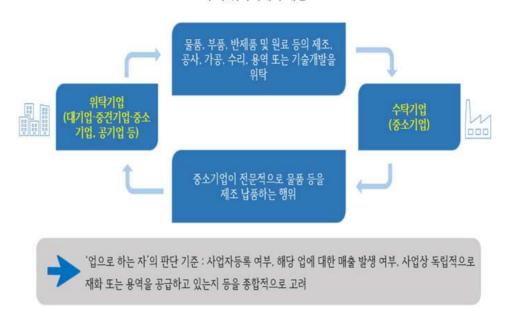
1. 납품대금연동제란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이하 "물품 등"이라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적은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때, 위탁기업(의무자)이 연동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재하여 사전에 발급해야하다.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조 제 13호)
- ▶주요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 2조제 12호)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 수탁•위탁거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 제조,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의 예 시를 포함한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 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행위를 계속 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 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실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다.

3. 용어의 정리

1.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 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2. 수탁기업

-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소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3. 주요 원재료

-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 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한다.
-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 섬유, 합성수지
- ④ 수탁기업이 위탁 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에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4. 연동 대상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다만, 해당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5.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한다.

6. 원재료 기준 가격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시점의 연동 대상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7. 조정 요건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

8. 조정 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9.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10.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특별약정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 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1. 납품대금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예)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5,000원

납품대금 연동 절차

-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다.

2. 납품대금의 조정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 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 등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 다.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3. 「납품단가 변동표」의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조정 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 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한다.
-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사항에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갈음할 수 있다.

4.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 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 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 의 납품대금을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서류의 비치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와 부속되는 「납품대금 변동표」 」 및 「납품대금 변동표」를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 어야 한다.(상생협력법 제 39조)

5. 납품대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 사항에 충분히 협의하여 약정서에 약정서 작성방법 기재해야 한다.

1. 물품 등의 명칭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또는 기술개발 (이하, "제조")을 위탁한 물품 등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 ② "물품 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을 말한다.
- ③ 품목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한다.
- ④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2. 연동 대상 원재료

- ①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
- ② 다만,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요 원재료"를포 함해야 한다.
- 주요 원재료 :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④ 이외 "연동 대상 원재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해당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원재료
-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위탁기업이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
- ②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에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으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재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 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①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
- ②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한다.
- ③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조정요건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100분의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으로 기재
- 예) 조정요건을 ±3%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였다면,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기재한다.

6. 조정주기

- ①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 ②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7. 조정일

- ①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 ② 조정 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③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입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모두 기재한다.
- 8. 조정 대금 반영일
- ①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 ②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③ 연동 대상 원재료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모두 기재한다.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 ①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 ②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시

1)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5,000원
- 2)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조정될 남품단가(단위: 1개)]

-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2kg) + 10,000원
- 3)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경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5,000원
- ※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x 철 중량 + 기타항목
-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x 반영 비울(100%) x 동 중량(10kg)>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동 기준가격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 동 중량: 10kg

5)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조정될 남품단가(단위: 1개)

= 직전에 적용된 납품단가 x (1 + 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x 단가 변동 비율(50%)

10. 기타사항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납품단가의 절사기준 등)

6. 납품대금연동표 작성예시

1. 연동 대상 원재료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한 사례

구분	기재	사항	
1. 물품 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연동 대상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간)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 고시가)	
4. 원재료기준가격의 변 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 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x 알루미늄 중량 (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중량(0.1ton)) + 5,000,000원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7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 → 조정될 납품단가: 3,300천원/ton x 1ton + 10,000천원/ton x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 (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 → 조정될 납품단가: 3,000천원/ton x 1ton + 12,000천원/ton x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2. 한 건의 수탁 · 위탁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구분	기재사항
1. 물품 등의 명칭	고정식 프로펠러
2. 연동 대상 원재료	구리
3.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 점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이 나프레그 어두 사시	최종 납품 대금 =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10.기탁시청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 함
-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천원/ton
-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 요건 충족)
- → 조정될 납품단가: 1ton x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 →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23년 6월 1일
- 3.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방법
- 1) 특별약정 체결시 납품단가
-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물품 등에 관한 단위도 명확히 표기하여 기재
- 예)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0원(단위: 1개)
- ②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
- 예)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000원(단위 : 약정한 납품대금 총액)
- 2)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① 특별약정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조정 일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 ②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10,000천원/ton
- ③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예)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 3) 조정대금 반영일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납품대금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 예)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조정대금 반영일도 매월 1일로 정하였고, 조정일인 '23년 1월 1일에 납품
- 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조정대금 반영일 인 '23년 1월 1일을 기재
- 4)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①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일 기준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
- 예) 예컨대 조정일이 '23년 1월 1일이고, 비교시점이 '22년 12월인 경우, '22년 12월의 원재료 기준
- 가격을 기재
- ②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한다.

③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100,000원(단위:1개)◇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10,000천원/ton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 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3년 2월 1일	11,000천원/t on	104,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3년 3월 1일	12,000천원/t on	108,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3	3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6. Q&A로 이해하는 납품대금연동제

1.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 납품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mark>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 하는 원재료</mark>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3.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숙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관련 참고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 의류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레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골프장 등 특수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으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4.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조 및 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 - 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 3 -) () 3 -) () 3 -) () 9 마당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 · 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하 생략)

5.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주요 원재료란

- ①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6.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수탁 · 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7.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 위탁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8.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해당됩니다.

10. 대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 대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관련 참고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으로서 연동제 적용 가능한지?

-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다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참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수탁 · 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 · 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2.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 2차 협력사(위탁기업)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3.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일인 '23년 10월 4일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4. MRO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지?

-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위탁 거래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미연동 합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 화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 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 가격을기준 지표로 설정하거나,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 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 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7. 물품을 납품할때 소용되는 유반비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 일반적으로 운반비는 경비 성격으로서 원재료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관련 참고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18. 화물운송용역 위탁 시 운송업체의 유류비도 원재료인지?

•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9.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 페인트 도장공사를 공사위탁 또는 수리위탁을 한 경우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물품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기준 지표 및 ⑤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23. 10.)

110001	10 10 1 1 10 2 0 1 7 0 (20: 20:)
구분	પાક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 1. 위탁의 내용
-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 3. 남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 기준시점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서 대금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비교시점이란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년 1월 1일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인 '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년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 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만일,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년 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 반면, '23년 2월 1일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시점의 기준 가격은 약정체결일('23년 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 평균 가격,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년 3월 1일)의 전월인 '23년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22. 조정요건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젓하는 것을 말한다.

2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하는지?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 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24.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25.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단가(원/EA)

- [7](원/EA)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X 원재료 증량(kg/EA) X 반영비율(100%)] 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
- ** (예시) 29,000원/EA = 25,000(원/EA) + (2,000(원/kg) * 2(kg/EA) * 100%)
- (조정요권)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 기타 원가 구성 내역은 가공비 5,000원으로 가정
- - ※ 변경 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 ※ (예시) 29,000원 = 12,000(원/kg) X 2(kg) + 5,000(원)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월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26. 원재료 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마,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 위탁기업 간 혐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7.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약정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사용을 권장하는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8.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mark>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mark>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29. 수탁기업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생협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 수탁기업과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30.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혐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 제 사 항(에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1 6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31.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수 있는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2.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참고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33.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 • 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4.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은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5.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중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36.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7.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에는?

-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mark>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하므로,</mark>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등과 함께 각 처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38.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3호의2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9.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 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40.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간의 관계는?

•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 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성 0구 시정조치 벌전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41.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괴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예시) 원사업자가 연동약정서 발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43.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방안은?

-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도 가능합니다.
- * 탈법행위 :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44.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5.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 생략)

46.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위반인지?

-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7.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8. 동행기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동행기업이란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kr)를 통해 참여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참여신청서를 이메일(med@win-win.or.kr)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 (관련 링크)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310&bcldx=1039389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신청접수 문의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TF	02-368-8470, 8969, 8962, 8963

<제출서류>

- 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신청서
-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계획서
-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④ 사업자등록증

49. 동행기업 참여 시 인센티브는?

-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
-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⑩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23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 ①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50.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납품대금 연동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①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1.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할 계획입니다.
-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 (기존 2점→3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mark>공정위</mark>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2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관련 참고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지표
제도도입	1.0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 - 시범운영 참여(1.0점), 상시모집 참여(0.5점)
및 운영실적	2.5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③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참고 및 주의사항		 총 합산점수는 3점 이내에서 인정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을 통한 납품대금 조실적 증빙 서류를 동반위에 제출(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약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전제적으로 조정한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 * 납품대금 조정 관련 품의서 등 결재서류, 단가 조정 전후 자료 등 운영 실적은 납품대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만 반영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대금 총액 대비 인상 지급한 대금 비율에 따라 차등화 10% 이상 0.15점, 10% 미만 0.1점 조정협의 제도 실적 자료의 경우 실제 단가 조정 및 협의 과정 전반이 상세하게 제출학자로만 인정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3 3.가.9) 및 10))>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

-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

-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

52.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시기는?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23.7.4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23.10.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7.4일부터 시행되고,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성실한 협의의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납품대금 연동 회피를 위한 위탁의 취소·변경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은 10.4일부터 시행됩니다.

PART 6. 공정거래 법규 위반과 개인의 책임

1. 서설

1. 개요

-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발주처 등), 위반행위자인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더하여 회사 역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과징금액 상당액, 그리고 ②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상당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역시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행사동향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기소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29조 제1항, 하도급법 제32조 제1항, 대리점법 제33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44조 제1항, 대규모 유통업법 제42조 제1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에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만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 위반 행위를 억지 한다는 제재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발 사례가 중가하고 있음
- 예컨대 2003 ~ 2011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66건이었으나, 2018 ~ 2022년까지 불과 5년의 기간 동안 고발 건수는 무려 234건으로 연 평균 기준 무려 6.4배나 증가하였음
- ▶이에 더하여 ① 2013년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 고발요청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중가하고 있고,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고발요청을 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점차 중가하고 있음

2.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동향

▶과거에는 개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행위 자체가 행위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대체로 집행유예혹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특히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3.개인에 대한 민사적 책임 1. 개요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발주처 등), 위반행위자인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더하여 회사 역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있을 경우 그 과징금액 상당액, 그리고 ②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상당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역시 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최근에는 특히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원을 상대로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관여 임원 개인'이 회사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 279347 판결), 관여 임원 10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억 9,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원심을 확정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3. 일선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와 같은 임원 이외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역시 확인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대학교가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입찰 담합에 관여한 'SI팀의 팀장 및 같은 팀의 팀원'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팀장의 경우 1,200만 원의, 팀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나48719 판결).

PART 7. 최근 정책동향 및 주요제재사례 모음

1. 최근 정책동향 2024년 주요 정책 동향

1. 최근 정책동향 언론 모니터링 리스트

	내 용	일시
1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4.02.
		01
2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 24.04.01
3	2024년 공정거래 정책 전망과 시사점	' 24.04.02
4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 24.05.21
5	공정위, 과징금 처분사건은 '늘고' 액수는 절반으로	' 24.05.22
	'줄고'	24.05.22
6	나이키도 한국에서 갑질하면 처벌 추진한다.	' 23.05.09
7	유럽발 'ESG규제'본격화 한국 기업에 리스크?	' 24.04.28
8	'점수 미달 땐 납품 못한다' 현대차 파격 결단에 '초	. 24.06.09
	긴장'	24.00.03
9	공정위,독점유발하고 경쟁막는 지자체 조례규칙 172건	' 24.05.01
	개선	24.00.01
10	'건설업계 특성, 업계 의견 반영한 특화된 납품단가연	' 24.06.28
10	동제 연내 이런한가정 공정위 위원장 인터뷰	24.00.20
11	불공정 거래관행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위한 하도급법	' 24.06.28
	개정안 발의	24.00.20
12	컴플라이언스와 인센티브 -이외규 변호사(법무법인 중앙	' 24.06.29
12	이평)	24.00.23

2.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2.1.)

관계법	하도급법 제35조	
	기술유용 행위 억제 및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개정배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지속 발생 기술유용에 대해 최대 2배	
	배상만 인정하는 등 과소 배상 경향 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개정내용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가능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가	
기대효과	억제되고, 새로 도입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3.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추진계획(2024.4.2.)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탈법행우					
납품단가연동제 감사강화	쪼개기계약, 납품대금 미연동 강요 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				
	위 등 집중 감시				
	수급사업자 피해예방과	부당특약 무효화하는 하			
		도급법 개정 추진			
		자진시정시 과징금 70%			
하도급 분야 역점 정책		감경 시행령 개정			
	신속한 구제	분쟁조정절차운영 강화			
		(90일기한, 소송비용 절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조기하이 기에고 된 그	운영 점검 강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구두계약관행,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 중적인 감시				
	기술자료 유용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이 민사 가처분을 통하여 신속히 침해행위 금지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추진	를 도모하는 '사인 금지 청구제'를 새로운 민사				
	적 구제수단으로 도입 추진				
	①'담합,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				
공정위-검찰 간 업무협의체인 공정거래사법협의회 강화	한 법집행', ②'심각한 반칙행위 원칙적 고발 및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등 ③전속고발제도의 개				
	선과 공정위-검찰 간 협력 강화'				
	공정위와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도 및 검찰 총장의 고발요청 제도'를 상호 보유				
	하면서 경쟁, 법 집행 과정상 상호 견제 및 협력				
	관계				
	[교계				

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24.5.21.)

개정배경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경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
	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 낮음.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
	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
	-하도급법 관련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개정내용	50%로 확대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면 최대 50%, 조
	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기대효과	기존에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 개정으로 위반업체가 '소송에
	갈 바에는 과징금을 줄이고 피해 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

5.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2024.7.3.)

주요정책방향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기간	-원사업자 24.6.28~7.31		
			-수급사업자 24.8.26~10.6		
		내용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하도급지급현황		
연동제 안착 지원 강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하도급대금연동제 도입현황		
		목적	-향후 법위반행위 감시, 제도개선 활용		
			-하도급대금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 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		
			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		
담합 단속	담합 문제가 물가를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강화	(20년 137건, 21년 138건, 22년 149건, 23년 189건)				
건설하도급대	고기이 기그머러 보시체 때 비이 비교기도 비그 보기				
금 지급규정	-공정위 지급명령 불이행 땐 법인 대표자도 벌금 부과				
위반 제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배포				
강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 준수				
70 4					

2. 주요제재사례 1.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사례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제재조치
담합	디비(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305억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 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 재,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과징금 12억원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혐의.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 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포착	구속 24.7.5
부당지원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 사,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입찰담합) 등 혐의로 기소 주요 감리업체들은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68명기소 7명 구속 24.7.30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맡도록 부당지원해 2012~2019년 영업이익이 거의 없던 MJA와인을 지원하고, MJA와인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남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제기 →벌금 1억원